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자 원 순 환 과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
(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

구 미 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
(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3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공정한 경쟁입찰 통한 민간대행 업체 선정을 하고자 하며, 이에「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시 생활폐기물(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나. 추진근거

1)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3)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4)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의 대행지정)

다. 대행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간)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일반폐기물 : 3개구역
2) 음식물류 폐기물 : 2개구역
3)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 1개구역

마. 소요예산 : 16,542백만원

1) 일반폐기물 : 9,274백만원

2) 음식물류폐기물 : 4,614백만원

3) 재활용품·대형폐기물 : 2,654백만원

※ 산출근거 : 2026년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름

바. 대행구역

1) 일반폐기물

구 분	수집·운반 구역	비 고
1구역	고아(원호·문성지구), 원평, 지산, 도량, 선주원남, 광평	
2구역	송정, 형곡1·2, 신평1·2, 비산, 공단, 상모사곡, 임오	
3구역	인동, 진미, 양포. 제1,2,3,4공단, 산동 4공단 확장단지	

2) 음식물류 폐기물

구 분	수집·운반 구역	비 고
1구역	고아(원호·문성지구), 송정, 원평, 지산, 도량, 선주원남, 형곡1·2	
2구역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 상모사곡, 임오, 인동, 진미, 양포, 산동 4공단 확장단지	

3) 재활용품·대형폐기물

구 분	수집·운반 구역	비 고
1구역	인동, 진미, 양포	

3. 부서의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민간대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3)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4)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생활폐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보고서 : 탁월～우수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성과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5. 3. 24. ~ 2025. 9. 19.

○ 평가업체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소

○ 대　　상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6개업체)

○ 평가기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설적 평가 기준 적용지침(환경부 2024.5)

2. 평가 방법 및 배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2)	가점, 감점 2점

3. 평가결과

대행업체	평가항목			소계	평가등급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		
미래환경	29.36	39.93	25.84	95.13	탁월
구미환경산업	27.65	38.08	23.68	89.41	우수
공단환경	29.00	39.67	26.68	95.35	탁월
늘푸른환경	29.79	39.77	24.70	94.26	탁월
㈜에코환경산업	29.19	39.71	22.30	91.20	탁월
㈜태흥환경개발	26.47	39.18	24.76	90.41	탁월
평균	28.58	39.39	24.66	92.63	

4. 평가결과 적용

등급	평가점수	활용(예)	
		대행기간 중	재계약 시
탁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개선 조건부 입찰
부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영업정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울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대행지정을 할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모(추첨)하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행지정을 받은 자의 수집·운반구역은 구미시행정구역으로 하되, 사업활동(제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 (일반쓰레기,음식물류,재활용·대형 폐기물)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처리 등의 대행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격기준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기준

○ 추계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년간)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16,542	17,038	17,549	18,075	18,618	87,822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6,542	17,038	17,549	18,075	18,618	87,822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6,542	17,038	17,549	18,075	18,618	87,822

5. 부대의견

○ 계약 낙찰율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이민섭(☎480-5202)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권준원(☎480-522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6년)

구분	비목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합 계
		금 액	금 액	금 액	
노무비	직접노무비	5,631,873,934	2,582,004,475	1,723,158,027	9,937,036,436
	간접노무비	252,116,388	181,163,028	83,493,876	516,773,292
	소계	5,883,990,322	2,763,167,503	1,806,651,903	10,453,809,728
경비	감가상각비	160,388,051	221,391,666	12,356,833	394,136,550
	수리수선비	131,327,795	106,124,690	18,422,160	255,874,645
	보험료	575,110,100	269,975,109	176,597,457	1,021,682,666
	복리후생비	305,858,803	123,570,555	85,865,559	515,294,917
	유류비	543,666,805	229,939,440	91,208,220	864,814,465
	세금과공과	49,741,730	31,920,643	18,619,470	100,281,843
	지급수수료	3,662,400	65,597,597	1,229,120	70,489,117
	잡재료비	206,593,384	87,376,986	34,659,123	328,629,493
	지급사용료	4,165,274	1,944,973	1,715,297	7,825,544
	전력비/수도광열비	24,006,681	5,415,805	7,371,140	36,793,6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1,381,724	88,021,120	43,613,003	273,015,847
	소계	2,145,902,747	1,231,278,584	491,657,382	3,868,838,713
합계		8,029,893,069	3,994,446,087	2,298,309,285	14,322,648,441
일반관리비(10%)		401,494,652	199,722,303	114,915,464	716,132,419
이윤(10%)		843,138,770	419,416,839	241,322,474	1,503,878,083
대행비		9,274,526,491	4,613,585,229	2,654,547,223	16,542,658,943
예측발생량		52,613	28,170	5,244	86,027
톤당단가(원/톤)		176,278	163,777	506,207	192,296

* 원가산정 용역기관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소

* 202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결과(2025.9.)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과 장	김 형 순
안	팀 장	박재웅, 이동섭
자	담 당 자	이민섭, 권준원 (480-5202, 5223)